

[번역]

2007년 6월 30일

김현중
통상교섭본부장
대한민국 서울

김현중 본부장 귀하

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9장(노동) 제 19.5조(제도적 장치)제3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

각 당사국은 제19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9.5조제3항과 합치되게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. 제19.5조제3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기존의 채널과 중복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 당사국이 제19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는 다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제19.5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수립하는 새로운 절차의 범위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노동 사안에 관한 의견으로 한정할 수 있다.

양 당사국은 사소하거나 가치가 없는 의견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각 당사국이 의견을 검토할 때 (1) 의견을 제출하는 인 또는 그 밖의 인이

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그 사안에 관한 구제를 구하였는지, (2) 그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, 그리고 (3) 그 의견이 그 사안에 관한 최근의 다른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됨을 인정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 명/

수잔 C. 슈와브